

창원지방법원 2017. 9. 12 선고 2017나51010 판결 [임차권확인청구]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17. 9. 12 선고 2017나51010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 12 선고 2016가단30988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 종결 2017. 8. 29.

판결 선고 2017. 9. 12.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 12. 선고 2016가단3098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사이에 임대차

기간 2012. 10. 23.부터 2017. 2. 7.까지, 차임 연 3,600만 원으로 정한 2012. 10. 19.자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흥기

판사구지인

판사이병탁